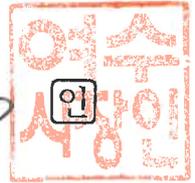


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안전관리
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8 월 11 일

여 수 시 장 서기명



여수시 조례 제1933호

붙임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”을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제4호 및 **제5호**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**제6호** 및 **제7호**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.

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여수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)”를 “(여수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**제1항**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**제2항** 중 “실무위원회”를 “실무조정위원회”로, “실무위원은”을 “실무조정위원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**제3항** 전단 중 “실무위원회”를 “실무조정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**제4항** 중 “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”를 “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**제5항** 중 “실무위원회”를 “실무조정위원회”로 한다.

① 위원회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는 여수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(이하 “실무조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위원회에 제출할 안전 사전검토
2. 관계 기관간의 협조사항 정리
3. 시 주관 축제(「공연법」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의 안전관리계획 심의

4. 민간·단체가 주관하는 축제의 행사 성격·규모·참여인원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 심의
5. 그 밖에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0조제1항 중 “실무위원회”를 “실무조정위원회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실무위원회”를 “실무조정위원회”로 한다.

제12조 본문 중 “실무위원회”를 “실무조정위원회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실무위원회”를 “실무조정위원회”로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실무위원회”를 “실무조정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</u>」에 따라 여수시에 두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시 주관 축제 (「공연법」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의 안전관리계획 심의</u></p> <p>5. <u>민간·단체가 주관하는 축제의 행사 성격, 규모, 참여인원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 심의</u></p> <p>6.·7. (생략)</p> <p>제7조(위원회의 회의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심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한다.</u></p> <p>1. <u>시장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</u>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4.·5. (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)</p> <p>제7조(위원회의 회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

2. 부시장
3.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
4.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
5. 여수소방서장
6. 여수경찰서장
7.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
8. 국립여수검역소장
9. 한국전기안전공사여수지사장
10.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
지사장
11.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

⑤ (생략)

제8조(여수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 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여수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④ (현행 제5항과 같음)

제8조(여수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) ① 위원회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는 여수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(이하 “실무조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

1.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 사전검토
2. 관계 기관간의 협조사항 정리
3. 시 주관 축제(「공연법」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의 안전관리 계획 심의

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 안전국장이고,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되며, 실무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·단체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15명 이내로 위원장이 선임한다.

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조사, 연구의 의뢰)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

4. 민간·단체가 주관하는 축제의 행사 성격·규모·참여인원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 심의

5. 그 밖에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 실무조정위원회-----

----- 실무조정위원은 -

-----.

③ 실무조정위원회 -----

-----.

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-----
-----.

⑤ 실무조정위원회-----

-----.

제10조(조사, 연구의 의뢰) ① -----
----- 실무조정위원회-----

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
시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
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
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 할
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1조(관계기관의 협조요청) ①
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
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
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
의견을 듣거나, 관계 기관·단
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
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 할
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2조(수당등) 위원회 또는 실무
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
게는 「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
성 및 운영 조례」에서 정하는
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
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
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
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
다.

제13조(회의록) 위원회의 간사는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관계기관의 협조요청) ①
----- 실무조정위원회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수당등) ----- 실무
조정위원회-----

-----.

제13조(회의록) -----

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비치하여야 하며, 실무위원회의 경우도 또한 같다.

제14조(회의결과의 통보) ①·②
(생략)

③ 실무위원회의 회의결과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
----- 실무
조정위원회-----.

제14조(회의결과의 통보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
③ 실무조정위원회-----
-----.